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제 1267 호 2020. 12. 10.(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30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31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32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3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365호[중산3·어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368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2

안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회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3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12. 4.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콘크르트 전주 5본)

3. 점용·사용의 장소 : 상안동 1215-3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일시 : 35㎡
- 영구 : 0.981㎡

나. 기 간

- 일시 : 2020. 12. 5. ~ 2020. 12. 5.
- 영구 : 2021. 12. 6. ~ 2025.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공사 동울**사장

나. 주 소 : 울산**시 *구 명**3길 8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2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0. 12. 7.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도시가스배관 매설)

3. 점용·사용의 장소 : 달천동 892-1번지 외 1필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 일시 : 18㎡
- 영구 : 1.1㎡

나. 기 간

- 일시 : 2020. 12. 7. ~ 2021. 1. 6.
- 영구 : 2021. 1. 7. ~ 2025.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경동**가스

나. 주 소 : 울산**시 *구 **로 260-10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232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천곡제전길 124	천곡동 165	2020.12.10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90)**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2.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365호

중산3·어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 공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지적재조사사업(중산3지구, 어물1지구)
2. 사 업 위 치
   - 중산3지구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117번지 일원(232필/102,032㎡)
   - 어물1지구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25번지 일원(100필/43,368㎡)
3. 공 고 기 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5. 사 업 기 간 : 2020. 12월 ~ 2022. 12월
6. 사 업 예 산 : 86,664천원(2021년 측량수수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서류 및 열람 장소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 사업지구 위치도, 지번별조서 등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52) 241-7584, 7588

   나. 팩 스 : 052) 241-7569

   다. 우 편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민원지적과)

중산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번별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대장구분	본번	부번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계			232필	130,332	102,032
1	중산동	토지대장	117	0	대	337	337
2	중산동	토지대장	118	0	대	260	260
3	중산동	토지대장	118	1	대	155	155
4	중산동	토지대장	119	0	대	451	451
5	중산동	토지대장	120	0	대	538	538
6	중산동	토지대장	120	1	전	704	704
7	중산동	토지대장	120	2	대	275	275
8	중산동	토지대장	121	0	대	553	553
9	중산동	토지대장	121	1	대	844	844
10	중산동	토지대장	121	2	대	244	244
11	중산동	토지대장	121	3	임야	195	195
12	중산동	토지대장	121	4	답	98	98
13	중산동	토지대장	121	7	임야	702	702
14	중산동	토지대장	121	9	임야	1,094	1,094
15	중산동	토지대장	121	13	임야	888	888
16	중산동	토지대장	121	14	임야	757	757
17	중산동	토지대장	122	0	답	131	131
18	중산동	토지대장	122	1	대	405	405
19	중산동	토지대장	122	2	도로	86	86
20	중산동	토지대장	122	3	답	397	397
21	중산동	토지대장	122	4	답	331	331
22	중산동	토지대장	122	5	대	220	220
23	중산동	토지대장	122	6	답	292	292
24	중산동	토지대장	122	7	답	177	177
25	중산동	토지대장	122	8	대	167	167
26	중산동	토지대장	122	9	대	50	50
27	중산동	토지대장	122	10	도로	79	79
28	중산동	토지대장	122	11	답	13	13
29	중산동	토지대장	122	12	답	79	79
30	중산동	토지대장	122	13	답	49	49
31	중산동	토지대장	122	14	도로	8	8
32	중산동	토지대장	890	0	답	42	42
33	중산동	토지대장	891	0	답	5,622	5,622
34	중산동	토지대장	892	0	대	843	843
35	중산동	토지대장	893	0	전	436	436
36	중산동	토지대장	894	0	대	996	996
37	중산동	토지대장	894	1	대	65	65
38	중산동	토지대장	895	1	대	1,011	1,011

39	중산동	토지대장	895	2	대	281	281
40	중산동	토지대장	895	3	대	26	26
41	중산동	토지대장	895	4	대	267	267
42	중산동	토지대장	895	5	도로	72	72
43	중산동	토지대장	895	6	도로	2	2
44	중산동	토지대장	896	1	대	463	463
45	중산동	토지대장	896	2	전	443	443
46	중산동	토지대장	896	3	대	665	665
47	중산동	토지대장	897	0	대	357	357
48	중산동	토지대장	897	3	대	912	912
49	중산동	토지대장	897	4	도로	141	141
50	중산동	토지대장	897	5	대	17	17
51	중산동	토지대장	897	6	대	5	5
52	중산동	토지대장	897	7	대	83	83
53	중산동	토지대장	898	0	대	124	124
54	중산동	토지대장	899	0	전	442	442
55	중산동	토지대장	899	1	전	37	37
56	중산동	토지대장	900	1	대	192	192
57	중산동	토지대장	900	2	대	294	294
58	중산동	토지대장	900	3	대	157	157
59	중산동	토지대장	900	4	대	336	336
60	중산동	토지대장	900	5	대	38	38
61	중산동	토지대장	900	6	대	190	190
62	중산동	토지대장	900	7	대	66	66
63	중산동	토지대장	901	1	대	351	351
64	중산동	토지대장	901	3	답	354	354
65	중산동	토지대장	901	4	답	61	61
66	중산동	토지대장	901	5	답	331	331
67	중산동	토지대장	901	6	대	397	397
68	중산동	토지대장	902	0	대	344	344
69	중산동	토지대장	903	0	대	530	530
70	중산동	토지대장	903	1	대	526	526
71	중산동	토지대장	903	2	전	39	39
72	중산동	토지대장	903	3	도로	30	30
73	중산동	토지대장	903	4	대	125	125
74	중산동	토지대장	904	1	임야	126	126
75	중산동	토지대장	904	2	임야	294	294
76	중산동	토지대장	904	3	임야	417	417
77	중산동	토지대장	904	4	임야	569	569
78	중산동	토지대장	905	1	대	112	112
79	중산동	토지대장	905	2	대	116	116
80	중산동	토지대장	905	3	대	195	195
81	중산동	토지대장	905	4	대	251	251

82	중산동	토지대장	905	5	대	148	148
83	중산동	토지대장	905	6	대	33	33
84	중산동	토지대장	905	7	대	4	4
85	중산동	토지대장	906	0	대	231	231
86	중산동	토지대장	907	1	대	192	192
87	중산동	토지대장	907	2	대	390	390
88	중산동	토지대장	907	3	대	53	53
89	중산동	토지대장	908	0	대	516	516
90	중산동	토지대장	909	0	대	797	797
91	중산동	토지대장	910	0	대	413	413
92	중산동	토지대장	911	0	대	164	164
93	중산동	토지대장	911	1	대	161	161
94	중산동	토지대장	911	2	대	18	18
95	중산동	토지대장	911	3	대	11	11
96	중산동	토지대장	912	0	대	347	347
97	중산동	토지대장	913	0	대	132	132
98	중산동	토지대장	914	0	대	215	215
99	중산동	토지대장	915	0	대	476	476
100	중산동	토지대장	916	0	대	1,236	1,236
101	중산동	토지대장	917	2	대	1,167	1,167
102	중산동	토지대장	918	0	대	963	963
103	중산동	토지대장	918	2	도로	12	12
104	중산동	토지대장	918	3	대	651	651
105	중산동	토지대장	919	1	대	224	224
106	중산동	토지대장	919	2	대	215	215
107	중산동	토지대장	919	3	대	114	114
108	중산동	토지대장	919	4	대	276	276
109	중산동	토지대장	919	5	하천	153	153
110	중산동	토지대장	922	0	대	97	97
111	중산동	토지대장	922	1	대	217	217
112	중산동	토지대장	922	2	대	96	96
113	중산동	토지대장	923	0	대	321	321
114	중산동	토지대장	924	0	대	585	585
115	중산동	토지대장	925	0	대	489	489
116	중산동	토지대장	926	0	대	456	456
117	중산동	토지대장	926	2	도로	54	54
118	중산동	토지대장	926	3	대	6	6
119	중산동	토지대장	927	0	대	143	143
120	중산동	토지대장	964	1	대	172	172
121	중산동	토지대장	964	2	도로	142	142
122	중산동	토지대장	964	3	도로	179	179
123	중산동	토지대장	967	0	대	340	340
124	중산동	토지대장	968	1	대	512	512

125	중산동	토지대장	968	2	대	205	205
126	중산동	토지대장	968	3	대	476	476
127	중산동	토지대장	969	0	대	671	671
128	중산동	토지대장	969	1	대	787	787
129	중산동	토지대장	970	1	대	218	218
130	중산동	토지대장	970	2	전	212	212
131	중산동	토지대장	971	1	대	231	231
132	중산동	토지대장	971	2	대	698	698
133	중산동	토지대장	971	3	도로	18	18
134	중산동	토지대장	972	0	대	287	287
135	중산동	토지대장	972	1	대	606	606
136	중산동	토지대장	973	0	대	215	215
137	중산동	토지대장	974	0	대	527	527
138	중산동	토지대장	974	1	도로	28	28
139	중산동	토지대장	975	0	대	475	475
140	중산동	토지대장	975	1	대	90	90
141	중산동	토지대장	976	0	대	122	122
142	중산동	토지대장	977	0	대	72	72
143	중산동	토지대장	977	1	대	592	592
144	중산동	토지대장	978	0	대	972	972
145	중산동	토지대장	978	1	대	284	284
146	중산동	토지대장	979	0	대	423	423
147	중산동	토지대장	979	1	대	189	189
148	중산동	토지대장	979	2	도로	13	13
149	중산동	토지대장	980	0	대	767	767
150	중산동	토지대장	981	1	대	122	122
151	중산동	토지대장	981	2	전	430	430
152	중산동	토지대장	982	1	대	716	716
153	중산동	토지대장	982	2	도로	102	102
154	중산동	토지대장	982	3	대	63	63
155	중산동	토지대장	982	4	대	1,134	1,134
156	중산동	토지대장	982	5	전	266	266
157	중산동	토지대장	982	6	전	147	147
158	중산동	토지대장	982	7	전	37	37
159	중산동	토지대장	982	8	도로	6	6
160	중산동	토지대장	982	9	전	74	74
161	중산동	토지대장	983	3	도로	30	30
162	중산동	토지대장	990	2	철도용지	3,625	2,355
163	중산동	토지대장	990	12	철도용지	485	443
164	중산동	토지대장	993	1	대	973	973
165	중산동	토지대장	993	7	전	655	655
166	중산동	토지대장	993	8	대	144	144
167	중산동	토지대장	994	0	대	250	250

168	중산동	토지대장	994	1	대	289	289
169	중산동	토지대장	994	2	대	562	562
170	중산동	토지대장	994	3	대	68	68
171	중산동	토지대장	994	4	도로	18	18
172	중산동	토지대장	995	0	잡종지	272	272
173	중산동	토지대장	995	1	도로	2	2
174	중산동	토지대장	995	2	도로	4	4
175	중산동	토지대장	995	3	전	152	152
176	중산동	토지대장	995	4	도로	6	6
177	중산동	토지대장	996	1	대	672	672
178	중산동	토지대장	996	3	전	73	73
179	중산동	토지대장	996	4	도로	7	7
180	중산동	토지대장	996	5	도로	10	10
181	중산동	토지대장	996	6	대	281	281
182	중산동	토지대장	996	7	대	103	103
183	중산동	토지대장	996	8	대	184	184
184	중산동	토지대장	997	0	대	555	555
185	중산동	토지대장	998	1	대	528	528
186	중산동	토지대장	998	2	대	272	272
187	중산동	토지대장	998	4	대	231	231
188	중산동	토지대장	999	0	대	292	292
189	중산동	토지대장	999	1	대	279	279
190	중산동	토지대장	999	2	대	93	93
191	중산동	토지대장	999	3	대	596	596
192	중산동	토지대장	999	4	대	581	581
193	중산동	토지대장	999	5	대	214	214
194	중산동	토지대장	999	6	대	39	39
195	중산동	토지대장	999	7	대	278	278
196	중산동	토지대장	999	8	대	214	214
197	중산동	토지대장	999	9	대	102	102
198	중산동	토지대장	1000	1	대	181	181
199	중산동	토지대장	1000	24	임야	100	100
200	중산동	토지대장	1176	0	구거	894	894
201	중산동	토지대장	1178	0	하천	42,446	18,306
202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	제방	46	46
203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1	하천	278	278
204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2	하천	124	124
205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3	하천	269	269
206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4	하천	230	230
207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5	하천	116	116
208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6	하천	128	128
209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7	하천	980	980
210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8	하천	136	136

211	중산동	토지대장	1178	29	하천	268	268
212	중산동	토지대장	1178	30	하천	329	329
213	중산동	토지대장	1178	31	하천	97	97
214	중산동	토지대장	1178	32	하천	292	292
215	중산동	토지대장	1178	33	하천	185	185
216	중산동	토지대장	1178	34	하천	41	41
217	중산동	토지대장	1178	35	하천	33	33
218	중산동	토지대장	1178	36	하천	36	36
219	중산동	토지대장	1180	2	도로	2,291	2,291
220	중산동	토지대장	1180	6	대	54	54
221	중산동	토지대장	1180	7	대	57	57
222	중산동	토지대장	1180	8	대	48	48
223	중산동	토지대장	1180	9	대	4	4
224	중산동	토지대장	1180	10	도로	3	3
225	중산동	토지대장	1180	11	도로	2	2
226	중산동	토지대장	1180	12	대	57	57
227	중산동	토지대장	1180	14	대	35	35
228	중산동	토지대장	1180	15	도로	311	311
229	중산동	토지대장	1185	0	도로	6,508	3,921
230	중산동	토지대장	1186	1	구거	1,633	1,372
231	중산동	토지대장	1201	0	도로	390	390
232	중산동	임야대장	129	2	임야	2,823	2,8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1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수목원정원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사업 추진을 체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3조)
나. 정원문화의 육성, 정원도시의 조성 등(안 제4조~6조)
다.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민간정원의 개방 등(안 제7조~10조)
라. 주민참여 원칙, 마을정원사의 양성 등(안 제11조~14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포상 등(안 제15조~22조)
바.「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폐지

3. 근거법령

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공원녹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052-241-7957, 팩스번호: 052-241-793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화훼·조경 관련 산업, 정원·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방향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주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참여·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주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정책 추진

제7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종합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정원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구청장은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

제11조(기본원칙)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마을정원사의 운용 등)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 등

제1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마을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 정원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마을정원사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